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근거 및 명칭) 본 협회 정관 제9장 제32조에 의한 특별위원회로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학교운동부지도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초·중·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한 학교운동부의 운영 문제점 및 중장기 발전방법을 모색하고, 학교체육 관련 현안사항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하여 현장의견을 수렴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본 협회에 등록한 초·중·고 운동경기부(팀)의 지도자에 적용한다.

② 시도럭비협회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권익침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 강화방안 논의
2. 학생선수와 일반학생의 스포츠 활동 활성화 및 선순환체계 구축 논의
3.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관련 사항 제고
4.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처우개선, 근무환경, 진로와 관련된 사항 제고
5.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감독교사(학교교사), 학부모, 학생간의 갈등해소
6. 학교운동부 지도자와 관련하여 법적, 정책적 사항 논의
7. 기타 위원회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인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7인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해야 한다.

1. 동일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 재적위원수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4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
2.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회장이 본 협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선수출신자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사업과 관련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로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장이 지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8조(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1조(의결정족수) 위원회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2조(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위원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제13조(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의무사항) 위원, 간사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소위원회 설치운영)

② 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된 기능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에 시설, 의무, 경기시설용품공인 등의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정한다.

제16조(사무처리)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며 본 협회 사무국 해당 부서에서 지원한다.